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영아용품 포함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6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영아용제품 포함	3
2. 원료 또는 제조공정 변경 시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등 의무화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2. 7.
3. 회부연월일 : 2025. 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품으로 규정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용품은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원료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

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2조제9호 · 제17조제2항 ·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영아용품 포함

개정안은 ① 영아용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② 영아용품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조제9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2. ~ 8. (생략)	1. (현행과 같음)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u>1의2. “영아용품”이란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u> 2. ~ 8. (현행과 같음)
	9.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u>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10. ~ 13. (생략)	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영아용품 10. ~ 13.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사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2. ~ 8. (생략)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략)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되며, 이 중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위해도가 가장 높아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음.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개요]

구 분	대상품목	관리방법	위해도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4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제품검사 + 공장심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6개)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유아용 의자,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 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유모차, 유아용 침대 등	제품검사 (지정 시험·검사기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 (14개+α)	어린이용 가죽제품,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안경테, 어린이용 우산·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등	제품검사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²⁾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개 품목이 있으며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제품별 안전기준이 모두 적용되고 있음.

2)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함.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1.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
2. 어린이 놀이기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
3.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안전기준
4. 어린이용 비비탄총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비비탄총 안전기준

출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그런데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만 3~13세 어린이에 비해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하여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포함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영아용제품으로 정의하고, 영아용제품을 관리수준이 가장 높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영아용제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영아용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에서는 어린이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품목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영아용품 전체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포함할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의 복잡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며,

모든 영아용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어린이제품공통안전기준에 따라 36개월 미만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유해원소 용출검사 등 안전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중이며, 품목의 특성 및 위해도와 무관하게 만 2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관리할 경우 유해원소 등을 확인하는 제품검사 외에도 공장심사³⁾ 실시 등 과도한 안전관리로 사업자에게 인증 부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3)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2년마다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실시

2. 원료 또는 제조공정 변경 시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등 의무화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등이 안전인증⁴⁾의 변경신청, 안전확인⁵⁾의 변경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⁶⁾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4항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생략)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u>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u> <u><신설></u> <u><신설></u> ③ ~ ⑪ (생략)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 ----- ----- -----. <u>1.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u> <u>2.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u>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 ----- -----

4)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5)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

6)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

현행	개정안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6. (생략) ④·⑤ (생략) 제43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0. (생략) 2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2.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8항을----- ----- ----- ----- ----- 4. 제25조제9항을----- ----- ----- ----- 5.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제25조제6항을----- ----- ----- ----- ----- ----- ----- 22. 제25조제7항을----- -----

현행	개정안
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 ---
23. ~ 25. (생략)	23. ~ 2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⁷⁾.

또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⁸⁾.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⑪ (생략)

그런데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다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 등이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안전확인의 변경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으로 인한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현재 위해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만 제조공정, 원자재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공장심사⁹⁾를 실시하고 있고¹⁰⁾, 위

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⑫ (생략)

9) 공장심사는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으로, 자체검사 분야를 심사할 때 원자재와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심사하고 있음.

1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

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제품검사만 실시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제조공정, 원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확인의 변경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최초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에 실시하지 않은 제조공정, 원자재에 대한 심사를 변경신고 시에 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 신고가 최초 신고보다 엄격해져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변경신고 의무자에 제조업자 외에 수입업자도 포함되는데, 안전확인대

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 ⑤ (생략)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 ⑪ (생략)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정기검사의 방법·절차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인증서에 표기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공장이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 ⑦ (생략)

상어린이제품의 78.1%가 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업자가 해외 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의 변경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¹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수입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국내제조·해외수입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건수	비율
국내제조	15,760	16,566	17,385	49,711	21.9
해외수입	61,016	58,613	57,527	177,156	78.1
합계	76,776	75,182	74,915	226,873	1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문 의 처

02)6788-5464

11)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어린이제품(완구/의류 등) 기업의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90.8%('22년)로 대부분 영세함